

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#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재주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-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조례의 상위법인 「국어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,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“어문규범” 정의에 표준 발음법을 추가함(안 제2조제3호)
- “공문서 등” 정의를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로 규정함(안 제2조제5호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국어기본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, ‘안 제2조제3호’에서 어문규범의 정의에 표준 발음법을 추가하고, ‘같은 조 제5호’에서 공문서 등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.

- 이는 조례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,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.